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361
----------	------

제안일시 : 2012. 0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운영에 따른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일반적인 공무상 국외여행중 맞춤형 해외연수 범위 조정(안 제2조)
 - 3인 이상→삭제
-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조정(안 제5조)
 - 3인 미만→4인 이하로 변경 등
- 연수 및 출장보고서 전체의원에게 발표 사항 삭제(안 제10조)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증 보고서 분량 삭제(별지 제2호)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4.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자료 : 없음

충주시의회 규칙 제 호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3인 이상의”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3인 미만”을 “4인 이하”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전체의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중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을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p> <p><u>6. 3인 이상의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해외연수</u></p> <p>7.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p> <p><u>6.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해외연수</u></p> <p>7.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u>3인 미만</u>의 의원이 <u>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u>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u>4인 이하</u> -----</p> <p><u>제2조제2항</u> ----- ----- -----</p>
<p>제10조(연수 및 출장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여행 및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u>전체의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p> <p>[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절을 원칙으로 <u>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u></p>	<p>제10조(연수 및 출장보고서 등) ① ----- ----- ----- ----- <u>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 ※ ----- ----- <u>한다.</u></p>

관 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수신 : 충주시의회의장

제목 :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충주시 1부. 끝.

2012. 2.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